

검증 관련 보고서

사회복지법인 성애원 귀하

본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성애원”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행한 “아동양육시설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사회복지법인 성애원”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은 이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본인이 실적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은 1,077,117,540원이고, 집행잔액은 180,16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인건비 180,160원, 발생이자 2,034원으로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182,194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182,194원입니다.

2026년 4월 27일

부경회계법인 대표이사 정정사



※ 검증 관련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제목 및 수신인(지방보조사업자)
- ② 도입 문단: 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 ③ 범위 문단: 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 ④ 결론 문단: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지방보조금반환액
- ⑤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 ⑥ 검증보고서일(검증업무가 종료된 날,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 ⑦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실적보고서 검증결과

(뒤쪽)

1. 일반현황

지방자치단체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보조사업명칭	아동양육사업
정책사업명		보조사업자	사회복지법인 성애원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김문정
세부사업명		총사업기간	2025.1.1 ~ 2025.12.31
검증기관	부경회계법인	해당 연도 사업기간	2025.1.1 ~ 2025.12.31

2.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해당 연도 보조사업비

(단위: 원)

국고보조금(㉑)	지방자치단체 부담금(㉒)		자기부담금(㉓)	합계(㉔=㉑+㉒+㉓)	국고보조금비율(㉕=㉑÷㉔)
	시도비	시군구비			
92,841,075	984,456,625	0	0	1,077,297,700	8.62%

3.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㉖)	전기 이월분		집행액계(㉗=㉖+㉘)	수익금		
	전기 이월액(㉙)	집행액(㉚)		발생액(㉛)	반환액(㉜)	미반환액(㉝=㉛-㉜)
1,077,117,540	0	0	1,077,117,540			

당기분 집행잔액(㉞=㉖-㉖)	전기 이월 잔액(㉟=㉙-㉙)	집행잔액(㊱=㉚+㉚)	발생이자(㊲)	차기 이월액(㊳)	반환 대상액(㊴=㉛+㉛-㉜)	국고 보조금 반환액(㊵)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㊶)		자기부담금 정산잔액(㊷=㊴-㊵-㊶)
							시도비	시군구비	
180,160	0	180,160	2,034	0	182,194	0	182,194		0

4. 검증 결과

(단위: 원)

검증 후 집행잔액	검증 후 발생이자	검증 후 차기 이월액	검증 후 수익금	불인정금액	수정 후 반환 대상액	수정 후 국고보조금 반환액	수정 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수정 후 자기부담금 잔액
							시도비	시군구비	
180,160	2,034	0	0	0	182,194	0	182,194	0	0

5. 검증 의견

본 검증인이 사업비에 대해 관련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확인한 결과 사업비는 협약된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 검증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 이월액, 수익금 반환액, 지방보조금 반환액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검증 의견란에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의견만을 작성하고, 감사 의견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10mm × 297mm[백상지(80g/m²)]